

# 이천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

소관부서 : 정보통신과

제정 2014·4·17 훈령 제233호  
일부개정 2019·1·1 훈령 제274호  
(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공익목적의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의 설치·운영,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, 개인정보 영상의 수집, 유출, 오·남용으로부터 시민들의 사생활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“폐쇄회로 텔레비전”(CCTV : Closed Circuit Television)이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·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한 수신자에게만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.
- “영상정보”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CCTV로 촬영하여 광(光)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.
- “CCTV 시스템”이란 현장에 설치한 CCTV를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을 다양한 전송방식에 따라 이천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CCTV 통합관제 센터로 전송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.
- “정보주체”란 영상정보에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.
- “처리”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·저장·편집·삭제 및 재생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를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.
- “CCTV 통합관리”란 시 관내 또는 이천경찰서 및 이천시교육청(시 관내 초등학교

## 이천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

를 포함한다) 기관 간에 CCTV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·목적별·지역별로 설치된 CCTV 시스템을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.

7. “CCTV 통합관제센터”(이하 “통합관제센터”라 한다)란 시 관내에 공공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제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, CCTV를 이용한 각종 사건·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기능을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시는 생활안전, 법규위반 단속,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CCTV와 이를 통해 수집·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4조(영상정보의 보호원칙)** ①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CCTV의 설치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, 안전행정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
② 제7조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26조제1항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시장은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전담부서의 지정)** ① 시장은 CCTV와 통합관제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는 CCTV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제반업무에 대한 총괄 및 조정, 통합관제센터 구축·운영 업무, CCTV 운영협의회 설치·운영, 영상정보 자원 관리 업무 등을 추진한다.

## 제2장 CCTV의 설치·운영 등

**제6조(CCTV의 설치기준)** CCTV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라야 한다.

1. CCTV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2.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.
3. CCTV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CCTV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.
4.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.

**제7조(CCTV의 설치목적)** 시장은 CCTV를 방범, 쓰레기 투기방지, 주차관리, 교통정보수집, 불법 주·정차단속, 재난·재해예방, 시설물관리, 산불감시 및 어린이보호 목적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책임관 지정)** ① CCTV 설치·운영 책임관은 시설 설치 부서장으로 한다.  
② 책임관은 CCTV 설치·운영,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, 영상 정보에 대한 열람·삭제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  
③ 부서별 책임관은 CCTV 개인정보 취급자를 별도로 지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의견수렴 및 협의)** ① 시장이 CCTV를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
1.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, 「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」 제23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
  2. 해당 CCTV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·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
- ② 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통합관제센터 주관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,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.
- ③ 다른 법령에 따라 관련절차를 이행한 경우 사전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**제10조(안내판의 설치)** ① 시장은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등에 대하여 쉽게 인식 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  
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.

1. CCTV 설치목적 및 장소
2. 촬영 범위 및 시간

### 3.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

-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안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, 안내판의 크기는 부서별 책임관이 CCTV 설치장소 및 환경에 맞게 적정한 크기로 제작하여야 한다.
- ④ 건물 안에 여러 개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,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의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,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적거나 안내판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등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**제11조(CCTV의 조작 및 기능)** ① 시장은 CCTV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획득을 위해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·줌인 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② 시장은 CCTV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,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해 방범용 CCTV에 설치된 비상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12조(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)** ① 시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자원의 관리 전체업무에 대해서는 위탁하지 아니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CCTV의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시장은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영상정보를 조작·유출 등 오·남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CCTV의 설치·운영에 대한 점검)** 시장은 CCTV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## 제3장 통합관제센터의 구축·운영

**제14조(통합관제센터의 구축)** ① 시장은 CCTV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CCTV를 통합하여야 하며, 이 경우 타 용도 CCTV의 모든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.

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CCTV의 연계)**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CCTV를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.

② CCTV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상황인 경우에는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.

**제16조(관제의 범위)**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수용되는 모든 CCTV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. 다만,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관제의 범위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 목적에 따른 운영시간 외의 야간 및 주말·공휴일에는 방범 등 공익용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**제17조(통합관제센터의 역할)** ① 통합관제센터는 모든 CCTV의 관제기능을 통합·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CCTV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범죄 및 재난·재해 발생시 유관기관과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합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통합관제센터는 CCTV 설치 목적별 서비스 외에 지역 특성에 맞는 관제업무를 통합·운영하여야 한다.

**제18조(통합관제센터의 운영)** ①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CCTV 장비 및 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, 비상시 신속한 합동대

## 이천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

응을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.

- 제19조(인력 확보 등)**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공무원과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CCTV의 관제업무는 외부 전문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CCTV의 관제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이천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방법용 CCTV 관제에 필요한 경찰관 및 관제인원을 지원받아 24시간 관제하여야 한다.
- ④ 시장은 각 기관과 협의하여 관제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받아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.

- 제20조(관제 전담요원의 근무)** ① 관제 전담요원의 근무는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,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③ 관제 전담요원은 주간에는 설치 목적에 맞게 관제하고, 야간 및 유사시에는 방법으로 CCTV에 대한 관제업무를 수행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관제업무 근무자는 근무 중 CCTV로 발견한 범죄, 사고, 재난·재해 등에 대하여 이천경찰서 파견요원 및 재난상황실 등 해당업무 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.

- 제21조(교육의무)**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에 대해(업무를 위탁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)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- 제22조(유관기관과 연계 시 보안대책 및 운영성 확보)** 시장은 유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들과 시스템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필요한 보안대책 및 상호 운영성을 확보하여야 한다.

- 제23조(출입자 통제 등)**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통제(제한)구역으로 지정하고,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(제한)하여야 한다.
- ② 관계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·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

받아야 하며, 출입시 제한구역 출입대장(별지 제1호서식)에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근무자의 근무 교대(종료)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해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일반인이 통합관제센터를 견학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**제24조(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 등)**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CCTV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,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,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19.1.1>

1.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

2. CCTV 설치·운영 부서의 장, 이천경찰서 관련업무 부서장 및 이천시 교육지원청장으로부터 추천받은 관련업무 부서장

3. 주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 내 시민사회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

4. 영상정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
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통합관제센터 운영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.

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임기로 한다.

⑥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CCTV 설치·운영 시 지역주민의 협조에 관한 사항

2. CCTV 통합관리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

3. CCTV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

4. CCTV 설치계획의 타당성 여부

5. 취득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자문
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⑦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보안 및 CCTV통합관리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변동 사유가 아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통합관제센터 운영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.

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⑨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
2.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

3. 위원이 금품·향응수수, 배임·횡령 등에 연루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

4. 위원회 활동에 따른 직무 수행과 관련된 영상정보 비밀엄수, 정보이용금지 등 윤리 규범 위반시

5.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## 제4장 영상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 등

**제25조(수집의 제한)** 시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26조(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)** ① 시장은 영상정보를 보유 목적 이외에 이

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·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·제공하는 경우
  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3.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  4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5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
  6.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,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의 신속을 요하는 경우
-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의 열람·제공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영상정보 관리대장(별지 제2호서식)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의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·제공이 필요한 경우 통합관제센터 운영부서 장의 승인을 통해 자료를 열람·제공할 수 있다.

**제27조(열람 등의 요청)** ① 정보주체는 시장에게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(이하 “열람 등의 요구”)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.

1.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2.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  3. 그 밖의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
- ④ 정보주체는 열람 등의 요구를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.
1.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

2.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

3. 정보주체를 대리 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28조(영상정보의 접근제한 및 처리 등)** ① 시장은 촬영·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③ 시장은 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영상정보가 도난·누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**제29조(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)** ① 시장은 CCTV를 통해 수집한 영상 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후 30일 이상 경과시 삭제하여야 한다.

1.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
2.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

3.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파기방법은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.

1. 개인 영상 정보가 기록된 출력물(영상, 사진 등)은 파쇄 또는 소각

2. 전자기적(電磁氣的)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

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유관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환된 영상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. 단, 영상정보파일이 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날짜에 기술적으로 자동 파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.

**제30조(비밀유지 의무)**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

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## 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 · 1 · 1 훈령 제274호,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** ① 내지 ⑯ 생략

⑭ 「이천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」 제24조제3항 중 “안전행정국장, 예산공보담당관”을 “자치행정국장, 기획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⑮ 내지 ⑯ 생략

이천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

[별지 제1호서식]

제한구역 출입대장(제23조제2항관련)

연월일	출입시간	용무	출 입 자		입 회자			비고
			주소	성명	직급	성명	서명	

[별지 제2호서식]

**영상정보 관리대장(제26조제2항관련)**

번 호	구 分	일 시	파일 명 / 형 태	담당자	목적/사유	이 용 · 제 공 받 는 제 3 자 /열람 등 요구자	이용 · 제공 근 거	이용 · 제공 형 태	기 간
1	<input type="checkbox"/> 이용 <input type="checkbox"/> 제공 <input type="checkbox"/> 열람 <input type="checkbox"/> 파기								
2	<input type="checkbox"/> 이용 <input type="checkbox"/> 제공 <input type="checkbox"/> 열람 <input type="checkbox"/> 파기								
3	<input type="checkbox"/> 이용 <input type="checkbox"/> 제공 <input type="checkbox"/> 열람 <input type="checkbox"/> 파기								
4	<input type="checkbox"/> 이용 <input type="checkbox"/> 제공 <input type="checkbox"/> 열람 <input type="checkbox"/> 파기								
5	<input type="checkbox"/> 이용 <input type="checkbox"/> 제공 <input type="checkbox"/> 열람 <input type="checkbox"/> 파기								
6	<input type="checkbox"/> 이용 <input type="checkbox"/> 제공 <input type="checkbox"/> 열람 <input type="checkbox"/> 파기								
7	<input type="checkbox"/> 이용 <input type="checkbox"/> 제공 <input type="checkbox"/> 열람 <input type="checkbox"/> 파기								
8	<input type="checkbox"/> 이용 <input type="checkbox"/> 제공 <input type="checkbox"/> 열람 <input type="checkbox"/> 파기								
9	<input type="checkbox"/> 이용 <input type="checkbox"/> 제공 <input type="checkbox"/> 열람 <input type="checkbox"/> 파기								
10	<input type="checkbox"/> 이용 <input type="checkbox"/> 제공 <input type="checkbox"/> 열람 <input type="checkbox"/> 파기								

[별지 제3호서식]

개인정보 ( [ ] 존재확인 [ ] 열람 ) 요구서(제27조제1항관련)

※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10일 이내
------	-----	-------------

정보주체	성 명	전 화 번 호
	생년월일	
	주 소	

대리인	성 명	전 화 번 호
	생년월일	정보주체와의 관계
	주 소	

요구내용	영상정보 기록기간	※(예 : 2013.01.01 18:30 ~ 2013.01.01 19:00)
	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	※(예 : 이천시 부약로 00 인근 CCTV)
	요구 목적 및 사유	※ 개인정보의 요구를 원하는 대상 · 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.

『이천시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 · 운영 규정』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 정보의 존재확인 · 열람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  
(서명 또는 인)

요구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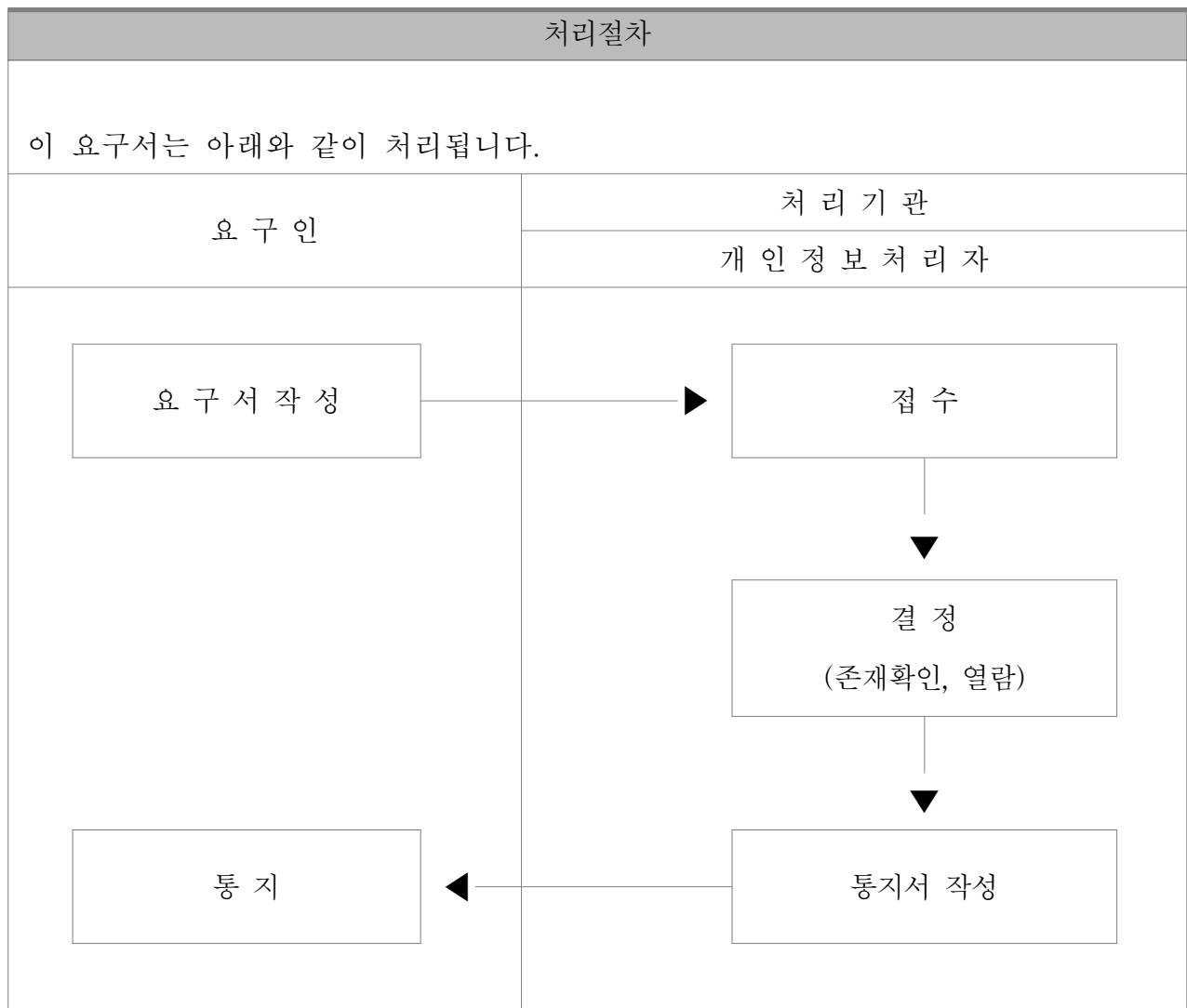
이천시장 귀하

작 성 방 법

- ‘대리인’은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분만 가능하며, 위임 시에는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‘열람’ 란에 [ √ ]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[ √ ] 표시를 합니다.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.

210mm×297mm[일반용지 7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]

(뒤 쪽)



이천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

[별지 제4호서식]

개인정보 ( [ ] 열람 [ ] 일부열람 [ ] 열람연기 [ ] 열람거절 ) 통지서  
(제27조2,3항 관련)

(앞 쪽)

수신자 (우편번호: 주소: )

요구 내용	
열람 일시	열람 장소
통지 내용 ( [ ] 열람 [ ] 일부열람 [ ] 열람연기 [ ] 열람거절 )	
열람 형태 및 방법	열람 형태 [ ]열람 · 시청 [ ]전자파일 [ ]복제물 · 인화물 [ ]기타
	열람 방법 [ ]직접방문 [ ]우편 [ ]전자우편 [ ]기타
사유	
이의제기방법	※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 방법을 적습니다.

『이천시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 · 운영 규정』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에  
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이 천 시 장 직인

210mm×297mm[신문용지 54g/m<sup>2</sup>]

(뒤 쪽)

### 유의사항

※ 개인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,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
1. 요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: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 등)
2. 요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: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
210mm×297mm[신문용지 54g/m<sup>2</sup>]

[별지 제5호서식]

### 위 임 장(제27조제4항관련)

위임받는 자	성명	전 화 번 호
	생년월일	정보주체와의 관계
	주소	
위임자	성명	전화번호
	생년월일	
	주소	

『이천시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 · 운영 규정』 제27조 제4항에 따라 ( 존재확인,  열람)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.

년        월        일

위임자

(서명 또는 인)

이천시장    귀하

210mm×297mm[인쇄용지(특급) 34g/m<sup>2</sup>]